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세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지원센터의 소속세관을 조정하고,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 하였던 인력의 직급을 상향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현장 서비스 강화에 필요한 인력 6명(6급 5명, 7급 1명)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 단서 중 “6명”을 “8명”으로, “4명, 관세주사보 1명”을 “7명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4항 단서 중 “6명(관세주사보 6명)”을 “10명(관세주사 9명, 관세주사보 1명)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서울세관의 관할구역란 중 “김포공항세관 및 안양세관”을 “김포공항세관”으로, 같은 란 중 “한정한다)”를 “한정한다)·광명시”로 하며, 같은 표 안양세관의 관할구역란 중 “서울특별시 관악구·동작구·영등포구·구로구·금천구·강서구(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)·양천구, 경기도 광명시·안양시·과천시·군포시·의왕시”를 “경기도 안양시·과천시·군포시·의왕시”로 하고, 같은 표 천안세관의 관할구역란 중 “해상·부두지역, 석문면, 대호지면 및 고대면은 제외한다)”를 “해상·부두지역은 제외한다)·서산시·홍성군·태안군”으로 하며, 같은 표 성남세관의 관할구역란 중 “성남시·하남시·광주시·이천시·의정부시·구리시·남양주시·여주시·가평군·양평군”을 “성남시·하남시·광주시·이천시·여주시·양평군”으로 하고, 같은 표 파주세관의 관할구역란 중 “파주시·고양시·동두천시·양주시·포천시·연천군”

을 “파주시·고양시·동두천시·양주시·포천시·연천군·의정부시·구리시·남양주시·가평군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 서울특별시의 세관명란 중 “안양세관”을 “서울세관”으로 하고, 같은 표 경기도의 세관명란 중 “성남세관”을 “파주세관”으로 하며, 같은 표 충청남도의 세관명란 중 “대전세관”을 “천안세관”으로 한다.

별표 4의2 중 총계 “374”를 “376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73”을 “375”로 하며, 관세주사 “99”를 “102”로 하고, 관세주사보 “79”를 “78”로 한다.

별표 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“4,814”를 각각 “4,818”로 하고, 관세주사 “842”를 “851”로 하며, 관세주사보 “885”를 “880”로 한다.

기획재정부령 제45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(기획재정부령 제64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819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조 중 “2명(6급 1명, 7급 1명)”을 “2명(6급 2명)”으로 한다.

기획재정부령 제75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(기획재정부령 제85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조 중 “별표 8의2의 정원 6명(관세주사보 6명)”을 “별표 8의2의 정원 6명(관세주사 6명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충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2명(관세주사 2명)과 별표 8의2의 정원 4명(관세주사 3명, 관세주사보 1명)은 각각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3조(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 다만, 「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, 별표 4의2의 정원 중 <u>6명</u> (행정사무관 1명, 관세주사 <u>4명</u> , 관세주사보 <u>1명</u>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	제33조(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8명</u> ----- <u>7명</u>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34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삭제	제34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세관관서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)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. 다만,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「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	----- -----

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 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으 며, 별표 8의2의 정원 중 <u>6명(관 세주사보 6명)</u>은 임기제공무원 으로 임용한다. ⑤ ~ ⑦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<u>10명(관 세주사 9명, 관세주사보 1명)</u>----- -----. ⑤ ~ ⑦ (현행과 같음)
--	---

신 · 구정원대비표

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4의2]

관세청 공무원 정원표(제33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계	.		.		.		
			<u>374</u>		<u>376</u>	+2	
	.		.		.		
	.		.		.		
일반직 계			<u>373</u>		<u>375</u>	+2	
	.		.		.		
	.		.		.		
관세주사			<u>99</u>		<u>102</u>	+3	
	.		.		.		
	.		.		.		
관세주사보			<u>79</u>		<u>78</u>	-1	
	.		.		.		
	.		.		.		

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8의2]

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(제34조제4항 단서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	계						
			•		•		
			<u>4,814</u>		<u>4,818</u>		+4
일반직	계						
			<u>4,814</u>		<u>4,818</u>		+4
			•		•		
			•		•		
관세주사			<u>842</u>		<u>851</u>		+9
			•		•		
			•		•		
관세주사보			<u>885</u>		<u>880</u>		-5
			•		•		
			•		•		